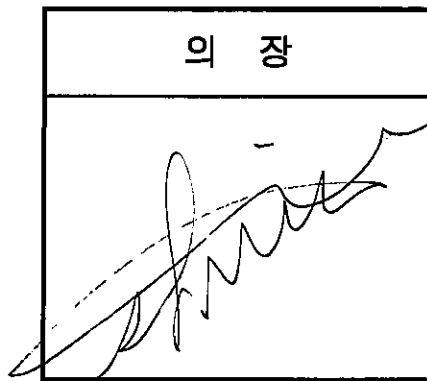


서울을 바라봅니다
시민을 생각합니다

시장 제출
재의요구안 접수 및 처리계획



No-389



2019. 1.

서울특별시의회
(의사담당관)

시장제출 재의요구안 접수 및 처리계획

「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」이 접수되었기에 지방자치법 제26조 및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자 함

□ 재의요구안 접수

- 안 건 명 :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(관련 165)
 - 제 출 자 : 서울특별시시장
 - 제 출 일 : 2019.1.3.(이송일 2018.12.14)
 - 재의요구 사유 : 지방자치법 제172조제1항(지방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되면 주무부장관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재의를 요구할 수 있음)
 - 부모휴가(안 제24조제14항)의 경우 법령으로 '자녀돌봄휴가'가 도입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부모휴가를 달리 정하기에 부적절하며,
 - 재난재해 대응 휴가(안 제24조제15항)는 병가 사유에 해당하므로 조례로서 특별휴가로 정하기에 부적절함
- ⇒ 두 조례안 모두 상위법령인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 제7조의6제1항에 위배되므로, 지방자치법 제172조제1항에 따라 재의요구 지시(행정안전부)

〈개정조례안 내용〉

- ▶ 의 안 명 :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(165)
- ▶ '18.10.15. : 개정조례안 발의(김호평 의원, 광진3)
- ▶ '18.11.26. :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개정안 원안가결
- ▶ '18.12.14. : 제284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가결 및 집행부 이송
- ▶ 주요 내용 : 취학 전 아동의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보육에 필요한 경우 연 3일(자녀가 둘 이상일 경우에는 6일)의 범위에서 부모휴가를 얻을 수 있도록 하고, 재난재해 현장에서 공무상 정신적 외상에 따른 치료 및 심리적 해소를 위해 특별휴가를 부여함

현행	개정안
<p>제24조(특별휴가) ① ~ ⑬ (생략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신설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신설></p>	<p>제24조(특별휴가) ① ~ ⑬ (현행과 같음)</p> <p>⑭ <u>취학 전 아동의 자녀를 둔 공무원</u>은 <u>자녀보육에 필요한 경우 연 3일(자녀가 둘 이상일 경우에는 6일)의 범위에서 부모휴가를 받을 수 있다.</u> 다만, <u>부부공무원의 경우 부부가 합산하여 연 3일(자녀가 둘 이상일 경우에는 6일)의 부모휴가를 받을 수 있다.</u></p> <p>⑮ <u>재난재해 현장 대응 등으로 인하여 정신적 외상에 따른 치료 및 심리적 해소가 필요한 공무원</u>은 <u>3일 이내의 범위에서 휴가를 받을 수 있다.</u></p>

처리기간 :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1조제1항

-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재의요구서가 도착한 날부터 10일 이내 상정. 단, 폐회 또는 휴회 중인 기간 미 산입

처리방법 : 지방자치법 제26조제4항

-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2/3이상의 찬성으로 가결 시 개정 조례안 확정
- 본회의 상정·의결
 - 안전상정 ➡ 재의요구 이유설명(집행부) ➡ 소관 상임위원회 의견청취 ➡ 질의·토론 ➡ 표결 및 의결

향후계획

- 소관 상임위원회에 의견조회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에 따라 10일 이내 본회의 상정
- ※ 의사일정 감안 시 제28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까지 처리기한

붙임 : 재의요구안 1부. 끝.